

양구군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양구군의회 의장 정광수 

2014년 1월 1일

양구군의회 규칙 제14호

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·지역 발전과 지역현안사업 등 특정분야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하거나 연찬회,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(이하 "연구회"라 한다)는 2개 분야의 연구회를 둘 수 있고, 연구회 구성은 희망하는 양구군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연구회는 회장과 간사 1인을 둔다.

③ 연구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하고 한 의원이 필요시 2개 연구회를 가입할 수 있다.

제3조(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) ① 연구회 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양구군의회의회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를 등록 한 후 30일 이내에 연구 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계획서에는 연구 활동의 주제, 목적, 추진내용, 소요예산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서의 접수·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관리한다.

④ 연구회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회의 회장은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연구회의 활동범위 등) ① 연구회의 활동범위는 지방자치제도, 지역경제, 보건환경, 교통문제, 문화관광 등 의정·지역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의 발굴개선에 필요한 연구 활동분야로 한다.

②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자료수집, 교수 또는 연구원, 관계공무원 등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.

③ 연구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연구회의 지원) ①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연구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회는 연구 활동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활동의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
③ 연구회는 연구 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.

④ 연구 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연구 활동비의 지급) ① 연구 활동비의 지급기준은 제5조의 지원범 위 에서 연구 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, 회의 개최비, 여비, 전문가 활용 경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비를 말한다. 이 경우 자료 수집비, 회의 개최비는 실비로 하고,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전문가 활용경비는 「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준한다.

② 연구 활동비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다.

1. 연구 활동비 예산총액
2. 연구회 소속의원의 수
3. 기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구 활동에 필요한 사항

③ 연구 활동비의 지급은 연구 활동계획서 또는 그 세부 계획서에 의하여 월별, 단계별 또는 연구 활동 종료 후 일괄 지급한다.

제7조(연구 활동비의 사용) ① 연구 활동비는 제5조의 지원경비에서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 활동이 지극히 부진하거나 연구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구회에 대하여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계획의 변경) ① 연구 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회가 연구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의 변경에 따른 연구 활동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(심사위원회) 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 의장·부의장을 포함한 의원 5인 이내로 구성하고, 안전 심사 시 안전 해당 연구회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.

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.

④ 심사위원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지원내용 등 연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안을 심사한다.

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이 경우 회의 또는 서면에 의한 심사를 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연구회 등록 신청서

양구군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구회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.

1. 연구회의 명칭 :
2. 연구활동 목적 :
3. 구성 인원수 :

구 분	성 명	서 명	비 고
회 장 간 사 회 원			

연구회장

(인)

양구군의회의장 귀하